

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[2012. 11. 9]

조례 제446호

일부개정 2014. 11. 21 조례 제 553호
(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일부개정 2023. 7. 28 조례 제1099호
(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군
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노인의 활
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
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
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7. 28>

1. “노인”이란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인일자리 창출”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
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설치·운영하
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
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
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「노인복지법시행령」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
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추진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
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

2.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3.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

4.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5.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평생교육의 활용)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6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·운영 등)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

2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

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
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

5.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정·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생산품 우선구매)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·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위탁)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·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
2.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그 밖에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

제11조(사업 참여자 모집 등)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참여자 모집, 선발 절차, 참가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지도감독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,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보험가입)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예산지원)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

증평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례」와 「증평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1. 21>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 11. 21 조례 제553호, 증평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증평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 「증평균 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를 “ 「증평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로 한다.

⑧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(2023. 7. 28 조례 제1099호,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
따른 「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